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과제

기준하(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NARS 현안분석 vol. 6 | 2018년 5월 18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 I. 서론 · 01
- II. P2P 대출 시장의 현황 · 02
- III. P2P 대출 시장 관련 문제점 · 07
- IV. 향후 과제 · 10
- V. 결론 · 12

이 보고서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P2P 대출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P2P 대출 시장에서 업체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을 정립하기 위한 향후 검토과제를 제시한다.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188개의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P2P 대출 시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기술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며, 다수의 개인들,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특성으로 인한 신용위험 분산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장하였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P2P 대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나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규제수준과 관련하여 업계와 정부 간에 의견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나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P2P 대출의 형태를 규정하며, 투자자보호와 해당산업의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과제가 요구된다.



I 서론

-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하고, 다수의 투자자¹⁾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불리기도 함
 - P2P 대출업체(P2P 대출 플랫폼)은 차입자의 대출수요 정보를 집중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P2P 대출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출중개 구조를 크게 직접중개형과 간접중개형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음
 - 직접중개형은 차입자와 대부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P2P 대출 중개업체는 차입자의 대출정보를 집중, 심사를 실행하며 차입자의 대출상환 및 대부자의 대출관리, 추심 등을 지원함
 - 영국의 Zopa, 미국의 SoFi, 중국의 P2P 대출 중개업체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대출중개 구조임
 - 간접중개형(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면 P2P 대출 중개업체가 대출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발행해 청약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LendingClub 등 미국의 대표적인 P2P 대출 중개업체가 채택한 대출중개구조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중개형 대출구조를 취하나,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대부업자가 연계금융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다름
- P2P 대출은 2005년 영국의 조파(Zopa)가 대출자산에 대한 투자를 중개하는 웹사이트로 최초로 시작한 이후, 미국에서 Prosper Marketplace, LendingClub 등이 설립되고, 이후 미국과 중국에서 활성화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됨
 - 세계적으로 5년간 연평균 120.6%의 성장률을 보이며 3,237억 달러(약 326조원)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였고(2016년 기준), 미국, 중국, 영국이 글로벌 시장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체재나 보완재로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로 최근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넘고 있음
- P2P 대출은 차입자의 측면에서는,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권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 개인 신용 대출을 받는 이들 중 기존 고리의 채무를 P2P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바꾸는 대환 대출이나,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1) P2P 대출에 참여하는 자금공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대부자, 투자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투자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지속된 저금리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P2P 대출업체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신산업에 대한 성장 기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P2P 대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II P2P 대출 시장의 현황

1. 성장배경

- P2P 대출은 정보기술 발전과 금융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는데, P2P 대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성장배경이 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효율성측면

- P2P 대출업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차입자와 투자자의 자금유통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무점포운영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절감된 비용이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이익으로 제공될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대출이 평균 이자율 12.4%(범위는 4.4~19.9%)의 조건으로 중금리 수준에서 실행되고, 투자자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10%인 것으로 나타남²⁾
- 반면에 자금 대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은행은 인적·물적 설비로 인한 고정적인 관리비용이 들고 이를 금리에 전가시키게 되며, 강한 건전성 규제 등으로 인하여 보수적인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나. 기술혁신의 측면

- 핀테크 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은행권과 달리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연성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기술을 기반으로 대출 중개과정을 자동화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실현하는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함
- 신용정보의 수집, 신용평가와 같은 기능 및 대출금 상환 등의 서비스를 중개기관이 제공함으로써 신용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새롭고 효율적인 신용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이 P2P 대출을 가능하게 함

2) 이성복, 「P2P 대출중개시장 분석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8.1

다. 위험 분산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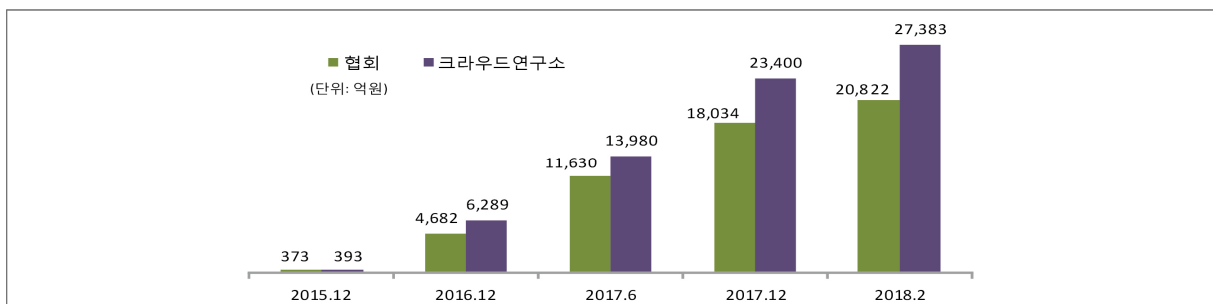
- 온라인 중개 특성으로 인하여 다수가 참여하여 위험이 분산되고, 다양한 자금조달 통로가 만들어짐
 - P2P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으로 다수의 개인들인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여러 자금공급자에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함
 - 은행의 경우 신용위험(부도, 연체 등 부실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은행이 지게 되는 반면에, P2P 대출에서는 개개인이 신용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하고 금리를 낮출 여지가 발생함
- 또한 투자자 측면에서 기존에는 참여가 제한되었던 대출시장(채권시장)에 접근, 즉 대출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이 온라인으로 쉽게 분산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고위험 대출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시장이 확대됨

2. 현황

가. 시장 규모

- 국내 P2P 대출은 2006년 머니옥션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한동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8년에는 누적 대출규모가 2조원을 넘고 있음
 - (대출 규모) 대출 규모는 공식적으로 명확히 집계된 바는 없으나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³⁾의 회원사 기준으로는 4,682억원(‘16년 말), 1조 8,034억원(‘17년 말), 2조 822억원(‘18년 2월)을 기록하고 있고,⁴⁾ 클라우드연구소⁵⁾ 기준으로는 6,289억원(‘16년 말), 2조 3,400억원(‘17년 말), 2조 7,383억원(‘18년 2월)으로 집계됨
 - 2017년도에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고, 2018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1 | P2P 대출 규모(누적) 현황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 클라우드연구소 자료

- 3) 한국P2P금융협회는 P2P 대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P2P금융업체에 대한 자율규제를 위해 조직한 사단법인임
- 4) 누적규모 15년(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7.12.)), 16~18.2월 한국P2P금융협회
- 5) 클라우드연구소는 P2P업체로서 시장현황을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고, 협회에 포함되지 않은 P2P 업체를 포괄하고 있어 업체 수나 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남

- (업체수) 2018년 2월말 기준 크라우드연구소 기준으로 188개 업체가 운영 중이고, 이 중에서 협회 회원사는 64개로 나타났으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133개임
 - 협회 회원사는 전체 업체수 대비 34% 정도이나, 누적 대출규모 기준으로 보면 76%의 비중 (2018.2월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대출규모가 큰 업체는 협회 회원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협회 회원 가입 시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내역을 공유하며 연 1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자율규제로 인하여 P2P 대출업체 중 협회 회원사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11 업체수 현황

(단위: 개)

구분	2016.12말	2017.6말	2017.12말	2018.2말
협회 회원사	34	56	64	64
업체수 (크라우드연구소)	125	162	183	188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 크라우드연구소 자료

- (연체율) 가중평균으로 구한 연체율은 2016년 12월말 기준 0.54%에서 2017년 12월말 기준 3.95%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전체 업체 기준은 파악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2017년 12월말 기준 183개사 홈페이지 중 144개 업체만 연체율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임⁶⁾
 - P2P 대출의 연체율 추이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최근 1%이하에서 유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다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⁷⁾
 - 2017년 12월말 기준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국내은행(0.36%), 상호금융권(1.16%), 카드사(1.87%), 저축은행(4.7%)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은행, 상호금융권, 카드사 등 보다는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임

표 21 연체율 현황(한국P2P금융협회 기준)

(단위: %)

구분	2016.12말	2017.6말	2017.12말	2018.3말
P2P 대출	0.54	1.33	3.95	2.21

주1) 연체의 정의 : 상환일로 부터 30일 이상 ~ 90일 미만동안 상환이 지연되는 현상

주2) 연체율 = 연체 중인 채권의 잔여원금 / 대출잔액 (취급총액 중 미상환 금액)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

6) 크라우드연구소 보고서(2017.12)

7) 다만 국내은행의 경우 주기적인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나. 대출 유형

- P2P 대출 유형은 크게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 건축자금(PF)대출, 기타 담보대출로 구분할 수 있고, 2017년 12월말 기준 부동산 PF(34%) > 부동산 담보(26%) > 기타 담보(20%) > 신용(20%) 순서로 누적대출액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P2P 대출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음

표 3 대출 유형별 누적대출 금액 및 비중(협회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6.12말		2017.6말		2017.12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동산 건축자금(PF)	1,964	42%	4,209	36%	6,095	34%
부동산 담보	856	18%	2,555	22%	4,728	26%
신용	1,217	26%	2,758	24%	3,558	20%
기타담보	645	14%	2,108	18%	3,654	20%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 재구성

- 한편, 클라우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부동산 PF(45%) > 기타담보(19%) > 신용(18%), 부동산담보(18%)의 순서로 누적대출액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고금리의 부동산 PF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임⁸⁾

표 4 대출 유형별 누적대출 금액 및 비중(클라우드연구소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7.6말		2017.12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동산 건축자금(PF)	5,825	42%	10,458	45%
부동산 담보	2,537	18%	4,261	18%
신용	2,978	21%	4,147	18%
기타담보	2,639	19%	4,507	19%

주: 기타담보는 차량, 채권, 상품, 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담보를 의미함

자료: 클라우드연구소 자료 재구성

다. 정부의 대응

- P2P 대출이 등장할 당시에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로서 기존의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규율을 하기로 하였고, 2017년 2월부터

8) 금융위원회,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보도자료, 2017.9.21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함

- 가이드라인은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광고 제한, 투자위험과 예상수익 등에 대한 공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정부는 투자자 및 차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도록 권고함
- 한편,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업체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없고 부실 업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2017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P2P 대출 중개서비스 감독 근거를 마련함
 - 대부분의 P2P 대출업체가 대출을 실행하는 통로인 연계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P2P 대출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함⁹⁾
 - 시행 이전부터 사업을 해온 P2P연계대부업자에게는 6개월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하였고, 유예기간은 2월 말 만료됨
- 참고로,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133개임(2018.4.12. 기준)
 - P2P 대출업체의 경우 대다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P2P 대출업체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9)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4(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자금제공자"라 한다)
2. 대부를 받으려는 자

Ⅲ P2P 대출 시장 관련 문제점

1. 규제체계 미흡

-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고 사업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요하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체계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가이드라인을 우회하거나 지키지 않는 부실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이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함
-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P2P 대출 서비스를 감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모체인 P2P 대출업체를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참고로,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133개로, P2P 대출업체인 클라우드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183개(2017년 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의나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P2P 대출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로, 업체는 위법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접중개형 대출구조를 취하고 P2P 대출 플랫폼과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P2P 대출업을 하고 있음
 - 직접중개형의 경우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대부업법」에 따라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 문제 등이 발생하여 대부분 간접중개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P2P 대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대부업법」 상의 수수료, 광고 규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P2P 대출의 핵심인 P2P 대출 플랫폼이 아닌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2. 투자자 피해 가능성 증가

-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여러 위험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우선 투자자의 자금이 차입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대출 중개업자에게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출 중개업자가 파산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경우 P2P 대출을 표방한 금융사기가 상당하고, 대표적으로는 P2P 대출업체인 e쭈바오가 연 14.6%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90만명을 대상으로 500억 위안(약 9조원)을 모았으나 다단계 사기 행각인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기도 함
 - 또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대출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P2P 대출업체가 퇴출되는 경우 채무상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됨
 - P2P 대출은 투자원금손실을 고지한 투자 상품으로서 부실의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국내 P2P 대출 시장은 시장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중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최근 들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대규모 부실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최근 2월에는 P2P 대출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최초로 업체에 투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이 불안전 판매, 사기 등을 이유로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또한 P2P 대출업체가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차입자의 신용을 좋게 평가하여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도덕적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P2P 대출이 개인 간의 거래의 성격을 가지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주어지는 정보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P2P 대출업체가 수행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부실 신용평가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지게 되는 반면에, P2P 대출업체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플랫폼은 보다 많은 중개를 성사 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

3. 규제수준 관련 쟁점

- 현행 가이드라인은 투자한도를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이외는 2천만원, 소득요건 구비시 4천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자기자본을 활용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간주이자로서 이자에 포함하여 대부업 최고금리의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상당함
 - 일부 업체는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닐 경우에는 2천만원 까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하여 가이드라인을 우회하고 투자한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투자한도나 수수료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업계의 수익성과 직결되어 있고, 자기자본대출은 대출 실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현 규제양상이 대부업과의 연관성이 큼에 따라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여 P2P 대출업체는 대부업과 분리되어 인식되기를 원함

- P2P 대출업과 대부업의 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대부업의 틀에서 억지로 규율을 하고 있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음
- 다만, 양자의 구분이 어렵도록 대부업체가 외형적으로는 P2P 대출의 형태로 영업을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금융소득세는 14%(주민세를 더하면 15.4%)인 반면, P2P 대출로 인한 투자 이익은 25%(주민세를 더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음
 - 정부는 P2P 대출로 인한 이익을 영업을 하지 않는 사인이 대출을 통해 얻은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¹⁰⁾이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인 25%를 적용함
 - P2P 대출 업체와 투자자는 높은 세율이 투자의 유인을 크게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자소득과 같이 14%의 세율 적용을 원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의식 등을 바탕으로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표 5】 P2P 대출 관련 발의 법률안 주요 쟁점 비교

구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120호)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09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052호)
중개양식	-	혼합	직접중개형	간접중개형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업체당 1천만원 (부동산 이외는 2천만원), 소득요건 구비시 4천만원 법인: 없음 	투자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21조)	-	-
자기자본 대출	금지	-	제한하되, 모집이 95%이상 완료된 경우에만 자기자본규모 이내 허용(제12조)	대출목적투자 허용하되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 이내로 규정(제15조)
차입자 한도	-	개인 1억원, 소상공인 5억원, 그 이외 법인 10억원(제20조)	-	-
수수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으로 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수취 가능(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 가능(이자와 수수료의 구분을 명시함) (제14조)	서비스 이용료 수취 가능(이자와 수수료의 구분을 명시함)(제11조)
이자 소득 간주	-	투자이익을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간주 (제22조)	-	-
정보공개	사업정보, 차입자에 대한 제공정보, 투자자에 대한 제공정보 규정	거래구조, 대출잔액, 연체율 등 업자 정보제공(제7조), 투자위험, 추심절차 등 투자자 제공 정보(제14조)	거래구조, 대출잔액, 연체율 등 사업정보 공개(제10조), 거래 위험, 추심절차 등 온라인 대주를 위한 정보공개(제19조)	거래구조, 대출잔액, 연체율 등 업자정보 공개(제10조), 투자위험, 추심절차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제19조)

10)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

Ⅳ 향후 과제

1. 신산업으로서의 규율체계 마련

-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제정 법률안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관련 개정안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통해 P2P 대출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규제체계가 미흡하고 대부업과는 산업의 특성이 다르며 P2P 대출의 핵심인 플랫폼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만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법률 체계에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제정안의 형태로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은 제대로 된 P2P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고, 대부업이나 크라우드펀딩, 일반 은행업 등과 비교하여 P2P 대출이 독자적인 금융형태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P2P 대출 시장이 사회적인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저금리시대에 일반 국민들에게 은행보다 나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기존의 금융시장이 포용하지 못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임
- 한편, 「자본시장법」에 편입된 지분형크라우드 펀딩이나 대부업과의 유사한 점으로 인하여 P2P 대출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으로 규율하여 관련 업권과 형평성 있게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P2P 대출은 이자수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업권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비교되고 있는 지분형크라우드펀딩, 은행업, 대부업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이 있는 규제가 마련될 필요는 있으나, 각 산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P2P 대출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현재는 간접중개형으로 대부분의 P2P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개의 형태를 활용할 것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실행이 어려운 직접중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진복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의 영업방식과 유사한 간접중개 방식으로 P2P 대출업을 규정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P2P 대출의 형태는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중개형 또는 간접중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각 국가별로 기존의 금융 관련 법률 체계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직접중개형은 차입자와 대부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도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채권 추심이나 담보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투자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 취급될 우려 등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됨
 - 간접중개형은 투자자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채권추심, 담보관리 등이 용이하나 투자자 보호가 불리하고 원리금수취권 매매에 대한 법적 성질이 확립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음
- 실행가능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개형태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타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자보호와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 체계 마련

-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업체 간의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위험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자본대출을 금지하고, 투자한도와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발의 법률안에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하지 않거나 일부 자기자본대출을 허용하며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금과 같이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감독이 불가능하고, 세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규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P2P 대출 규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업체가 기술력을 갖추고, 부도덕한 대출 및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규제의 초점을 공시 강화를 통한 위험 완화와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에 둘 필요가 있음
 - 향후 P2P 대출업자나 대출상품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미등록 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부실·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반영하여 발의된 세 개의 제정안 모두 사업자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와 투자자가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P2P 대출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V 결론

- 현행 P2P 대출 시장은 업체수나 누적대출규모 모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협회의 공시자료와 비공식 보고서인 크라우드연구소 자료를 비교할 때 협회 회원사와 회원사가 아닌 업체의 대출규모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투자자나 차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계 대부업자를 감독하고자 함
- P2P 대출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업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비금융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신용평가 기술과 대출 중개과정의 자동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신용평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한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국내의 현행 시장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부업의 틀에서 규율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P2P 대출업의 특성상 대출업체의 파산이나 연체 증가 등 채권의 부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플랫폼이 신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규제에 의한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시장 및 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우선 P2P 대출 시장의 사회적 필요성과 타 금융업과 비교하여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률적인 형평성 기준이 아닌 위험수준, 사회적 역할 등을 기준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규제의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간접중개형 또는 직접중개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투자자 보호나 채권추심, 투자자 자격 등이 달라지므로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할 것임
 -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하여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P2P 대출 규제의 초점을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정보 공시 강화에 두어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도덕적인 대출 및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2016.11.
- 금융위원회,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보도자료, 2017.8.
- 강현구·유주선·이성남, 「핀테크와 법」, 2017.4.
- 김수민의원실, 「P2P대출 이용자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 2018.3.
- 신경희, 「국내 P2P 대출 규제에 대한 법률상 쟁점」, 『자본시장 Weekly』 2016-4호, 자본시장연구원, 2016.1.19.
- 이건호, 「P2P금융의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2010.12.
- 이성복, 「P2P 대출중개시장 분석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8.1
- 서병호·이순호, 「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5.12.
-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8. 2.
- 클라우드연구소, 「P2P금융 성장보고서」, 분기별 및 월별 자료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P2P대출 서비스 실태조사」, 2016.6.
-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



NARS 현안분석 vol. 6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과제



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대)
www.nars.go.kr